

1971年度

食品衛生行政의 方向



食品衛生行政 發展의 해

政府는 1971年度를 “食品衛生行政 發展의 해”로定하고 보다 科學化한 手段과 보다 組織化된 監視網, 그리고 보다 신속한 機動力으로서 國內에서 製造加工되는 모든 食品이 가장 安全하게 유통되어 消費者에게 공급되는 방향으로 모든 「체계」을 통한 업무에 一路邁進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基本方向을 指標로 삼아 食品衛生管理의 철저를 기하고서 “71年度食品衛生事業指針”을 保健社會部 食品衛生當局에서 마련하여 예하 各級衛生行政機構는 이를 準則으로 삼아 식품위생관리와 이의 指導監督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食品衛生事業指導指針을 상세하게 要約하여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 시책의 방향을 크게 둘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不良食品의 出廻要因을 제거하기 위하여 無許可 및 有害食品의 근절과 許可業所中 法定施

申 光 淳

保健社會部食品衛生擔當官

設의 不備業所에 대한 강력한 정비를 단행코자하고 있으며

둘째, 食品의 品質向上을 위하여 食品製造加工業所에 대한 自家試驗室의 設置 및 自體品質管理를 위한 要員의 配置와 法定標示基準의 履行과 더불어 収去検査의 科學化 등으로서 그 品質이 保障된 食品의 流通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二大指標의 目的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좀더 구체적인 細部實施要領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위한 강력한 事業을 현재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 無許可 및 有害食品의 根絕策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大單位集團의 食品市場을 衛生의으로 指導管理하기 위하여 管轄衛生官署의 食品衛生監視員을 常駐配置하여 食品의 流通系路의 把握과 不正食品에 관한 情報入手와 더불어 有機

의인 連絡으로 機動的인 团束에 臨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 既存 告発「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은 물론 市以上의 地域에서는 食品團束機動班을 편성하여 常駐시킴과 동시에 이들에게는 司法警察官의 집무를 집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들 「팀」의 活動은 앞에서 밝힌 大單位市場의 常駐監視員의 情報와 告発「센타」등에서 들어 오는 告発狀況을 認知하여 기동성 있게 「팀워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셋째, 이와같은 活動監視의 결과 犯法者(無許可또는 有害食品의 製造 및 販売者와 같은 故意의 이거나 惡質의인 者)에 대하여는 司直當局에 告発措置하는 한편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따라 加重处罚를 단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無許可食品 및 有害食品의 근절을 기하기 위하여 잊어서는 아니될 것을 添記하여 보면 어린새싹의 殿堂인 学校周辺의 유해식품단속입니다. 即 학교주변에서 어린 새싹들이 값이싼 기호식품에 눈을 돌리고 있음을 기화로 저렴하고 불량한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어린이 건강에 赤信号를 자아 내게함으로 학교주변에는 학교당국과 그리고 学父母들의 협조로 계속감시와 단속으로 이런 부정식품의 판매기회를寸暇의 틈도 없겠끔 계속적인 감시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製造加工業所의 整備입니다.

食品의 유통과정에 있어 당해 식품이 生産으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공급되게 하기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식품이 生産되는 過程이 衛生的인 狀態下의 施設에서 그 식품이 제조가공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와 반하는 製造加工業所의 정비는 그 發生源을 제거하는 위생적 관리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現行法上 各業種別 施設基準을 豐상규제하여 이의 기준에 適合与否를 第一段階와 第 2段階로 구분하여 臨檢調查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第 1段階는 소정의 基準未達与否를 조사하여 상



〈필자〉

당기간 미달되는 시설을 보완 또는 改修할 것을 알리고 第 2段階는 이의 改修 또는 補完与否를 확인하여 미달되는 製造加工業所는 당해 영업의 許可를 취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既히 第一段階措置는 各市道에서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 오는 7月 1日부터 7月 31일까지 1個月間을 第二段階 施設調査에 착수하겠음 하고 있습니다.

3. 標示基準에 定한 所定의 標示事項에 따라 徹底한 履行을 促求하는 것입니다.

流通過程에 있는 食品의 標示는 소비자가 필요 식품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儒中계속 감시를 강화하고 標示基準에違背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保健社會部 訓令에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处分을 斷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4. 収去検査등의 科学化입니다.

流通過程에 있거나 또는 製造加工業所에 있는 食品을 収去検査함에 있어서는 보다 科学化한 방법으로 수거를 행하고 또한 시·도의 衛生試驗所機能을 최대한으로 증대할 것을 도모하고 있으며, 食品의 収가는 自己管轄內에서 제조가공되는 食品을 우선적으로 収去検査케 함으로서 管轄許可食品이 他市道의 許可食品보다 質의인 保障을 받겠음 하

도록하고 있는 반면, 収去의 목적으로 製造業所에 臨檢時에는 食品의 規格基準에 정한 安全한 包裝材料와 容器의 使用, 製品의 性状 및 유통 과정에서 變質, 腐敗되지 않도록 流通食品의 포장에 각별히 유의도록 지도를 할 것이며 食品의 檢査시에는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정한 有害物質含有与否와 規格基準에 정한 試驗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檢査결과 不適合으로 판정된 製品이 他許可機關의 許可製品으로 保健社會部에 報告를 택할 때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하여 조회하거나 재조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여 添言하자면 各市道가 행하는 食品營業許可中 製造品目許可를 받아야 할 영업을 당해 市道가 그 製造品目許可를 행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許可狀況)을 자체 없이 保健社會部에 보고하도록하여 全國的인 流通網을 통한 食品의 許可有無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違法·不當한 許可与否까지를 保健社會部에서 「체크」케 하는 등 事后管理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 食品製造業所의 自律의인 品質管理 透導策입니다.

製造加工業所가 행하는 自體製造加工의 工程이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現行食品衛生法 施行令을 改正公布하여 衛生管理人을 두어야할 営業의 種目을 보다 폭넓게 두도록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営業所의 施設基準에自家試驗室을 구비하여야 할 業種도 그 폭을 넓혀 義務化하도록하여 自己製品의 品質을 自律의으로 保證하도록 하는 등 自體管理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制度로서 제조시설이 自動化되어 있고 製品의 品質을 事前管理할 수 있는 要員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製造業所는 “優秀食品指定規程”에 의한 優秀食品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로하여금 편리한 선택과 優良業所의 育成 및 営業者 상호간의 善

意의 경쟁으로 시설 향상과 自己品質의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食品衛生要員의 資質向上策입니다.

保健社會部에서는 既히 国立保健研究院에서 全国重要市이상의 地域에 근무하고 있는 食品衛生監視員에 대한 資質向上에 따른 教育을 완료한바 있었고 또한 全国 192個 保健所의 常駐食品衛生監視員에 대한 地域別 1日教育을 実施完了한바 있읍니다. 이와같은 方法으로 各市道는 적어도 年 2回에 걸친 自體教育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営業者에 대하여는 간담회, 또는 定期적인 모임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講習会 등을 개최하여 営業者自身의 자질향상을 위한 衛生教育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7. 接客業所施設管理와 食品調理管理의 向上策입니다.

既히 실시되고 있는 衛生等級制를 강력히 추진하고 法上 監視回数의 履行등으로 從業員個人衛生管理의 徹底와 接客業所에서 調理食品의 安全한 공급으로 営養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簡易飲食物 및 行商行為에 対한 衛生管理策입니다.

첫째, 氷菓類 行商行為에 대하여는 有許可製造業所에서 製造된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칸디」, 「아이스크림」, 「삭빙」등의 行商販賣에 한하여 許容하고 있으며 이의 行商판매에 있어서는 당해 行商販賣對象製品을 제조가공하여 이를 공급하는 製造業所가 일체의 衛生管理는 물론 그 판매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行商판매의 과정에서 衛生上危害行為

가 적발될 때에는 이를 공급하는 당해 製造業所를 依法措置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와같은 措置方案으로서는 申告節次에 따라 製造營業所의 営業主는 申告를 하게하고 이의 申告를 畢한者에게는 行商用通이나 손수례의 外表에다가 누구라도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곳에 행상행위의 標示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簡易飲食路店에 대한 措置입니다. 이의 조치내용을 소개하면 定着型簡易飲食店은 食品衛生法에 의한 簡易飲食店營業으로하여 許可對象業種으로 規制하고 소정의 許可基準에 합당하면 허가조치하고 이에 미달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폐쇄조치를 단행하여 간단없는 위생적인 지도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移動式簡易飲食路店은 “飲食物行商行為申告要領”에 따라 신고처리하고 그 事後管理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조치는 現社會의/事件下에서 볼 때 대부분이 零細民을 대상으로, 零細民이 經營하는 業으로서 그 근절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業所에서 일어나는 식품위생상의 各種危害問題는 일시라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생적인 지도가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9. 食品販売業所의 衛生管理策입니다.

이는 71年度에 있어 처음으로 시도한 유통과정에 있는 위생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食品工業의 現代化와 食品製造技術의 向上發達로 都市人口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製造加工食品의 판매과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적으로 製造된 許可製品이 유통과정을 통하여 消費者에게 위생적으로 공급되게 함으로서 제조가 공으로부터 消費에 이르기까지 名實共의 三位一体式 衛生管理를 기함은 勿論, 食品衛生管理의 철저를 보다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食品販売店의 自体遵守事項制와 許可食品販売店指定制 및 優良食品販売店指定制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食品販売業所指定制는 그 실시 계획으로서 우선 地域과 対象을 全國一円에 걸쳐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의 빈도가 높은 地域에서만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실시지역은 全國市単位行政区域一円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市가 아닌 地域이라 할지라도 人家의 密集 또는 季節的으로 公衆이 多数集合하므로서 市街地形態를 이루고 있는 地域이나 觀光地域등으로서 管轄郡守가 필요로 할 때에는 앞에서 밝힌 바에 따라 이를 適用実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対象으로서는

1. 各製造業所의 直売店, 代理店
2. 食品都売店
3. 食品專門販売店
4. 食品取扱販売雜貨店(구멍가게 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정을 받은 食品販売業所는 당해 食品販売店의 衛生点檢과 衛生管理에 있어 보다 철저한 諸般遵守事項의 履行與否 등을 감안하여 許可食品販売店과 優良食品販売店의 두갈래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주기적인 위생감시와 不正食品의 판매금지등을 행하게하고 이와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店頭에 指定店舗임을 표시하는 表札을 달도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와같은 細部施策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게 하기위하여 保健社会部에서는 정기적으로는, 分期別로 市道의 食品衛生事業実績을 現地指導確認하고 있는 것이며 市·道는 管轄保健所의 事業実績을 또한 定期的に 巡廻指導를 하게 하고 있으며, 수시로 怠慢과 소홀로 민원의 対象이 되는 경우와 突發의 危害 등 事故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도 아울러 講究推進하고 있습니다.

